

보도 시점 2026. 4. 23.(목) 12:00 배포 2026. 4. 23.(목) 10:00
(브리핑 10:30)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시작,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 국세청의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는 세무 특화형 국세청 AI 챗봇
- 5월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분야 AI 챗봇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관련 국정과제】 24번,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
-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AI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 또한,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Guardrails)를 운영하고 있다.

| 범용 AI와 국세청 AI 챗봇 비교 |

구 분	범용 AI	국세청 AI 챗봇
활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넓은 일반 정보 제공에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신고·상담업무에 특화된 세무전문 답변 제공
답변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분야에서는 일부 부정확한 답변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제공
적시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개정세법·행정해석 등 즉시 반영에 어려운 측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개정세법, 신고 유의사항, 상담사례 등을 신속·주기적 반영

1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내용

- 국세청은 지난 3월 4일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강화·세정효율화의 3대 분야 중심으로 AI 법령 정보, 신고서 자동작성 등 총 65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 올해는 65개 과제의 세부 기능 구체화 및 AI 학습자료 정비에 집중하고 예산확보, AI 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주요 과제개발에 착수하여 '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 본격적인 과제개발에 앞서, 올해에는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 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 이는 내년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되어, 향후 대국민 AI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국세청은 '27년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납세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세무상담의 미래, 국세청 AI 챗봇

그간 운영성과

- 국세청은 올해 1월 생성형 AI 챗봇을 1차 개발한 뒤, 지난 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 챗봇의 상담 활용 가능성과 향후 고도화 방향을 확인하였다.
- 운영 결과, AI 챗봇이 납세자의 문장형 질의에도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총 이용자는 20% 증가(43,027명^(25년) → 51,670명^(26년)) 하고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 대비 약 26% 감소하였다.
- 1~2월 운영 기간 중 실제 이용자의 개선의견과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위한 보완사항을 검토하였으며, 5월 1일부터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에 일부 반영*하였다.
- * ①답변하지 못한 질의→관련 자료 추가 학습, ②내·외부 의견수렴→모바일 서비스 신규 제공, 신고서 작성사례·모의계산 등 실질적 콘텐츠 제공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국세청 AI 챗봇 서비스

- 국세청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 상담실무 등 국세청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AI에게 학습시켰으며, 내부 직원 검증 등을 거쳐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또한, 챗봇화면에 전자신고 영상(숏폼 포함),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등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예를 들어, AI 챗봇은 ①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②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③ 개정세법 반영, ④ 최신 예규 등 근거 기반 답변, ⑤ ARS 신고 간소화 등 개선사항 안내, ⑥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국세청 AI 챗봇과 범용 AI를 비교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국세청 AI 챗봇은 개정세법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사례 1] 개정세법 등 신속정확 반영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 '25년 귀속 3.1%로 조정 ('24년 : 3.5%)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② 범용 AI (개정사항 미반영) (4.17. 현재)
<p>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이자율</p> <p>오후 04:16</p> <p>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이며, 이는 2024년의 3.5%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자율도 2025년 3월 21일 이후 차입분부터 동일하게 연 3.1%가 적용됩니다.</p> <p>▶ 간주임대료 계산 및 기준이자율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주임대료 산입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3.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2025년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 연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제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이자율: 2025년 3월 21일 이후 차입분부터 연 3.1%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고려사항: 보증금 규모, 임대주택 수, 임대기간 등 • 고가주택 관련 추가 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됨 <p>▶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주임대료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계산 방법과 적용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관련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필요하신 경우 추가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p>	<p>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이자율</p> <p>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시거나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다 보면 '이자율' 계산이 꽤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p> <p>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p> <p>간주임대료란 월세 외에 받은 **보증금(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p> <p>☐ 계산 공식</p> <p>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p> $\text{간주임대료} = (\text{해당기간보증금} - \text{임대용부동산건설비상당액}) \times \frac{\text{정기예금이자율}}{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경우: 비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 원 초과)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p>☐ 2026년 적용 정기예금이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9%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고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개정세법 등 신속정확 반영	
*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 세액공제 금액 상향 : (1인당) 300원 → 500원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② 범용 AI (개정사항 미반영) (4.17. 현재)
<p>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사항?</p> <p>오전 10:48</p> <p>▶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사항 안내</p> <p>2025년 귀속부터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 제출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300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였으나,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인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과 이익을 채우고 납세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p>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시기: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공제 대상: 용역제공자가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제출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한 경우 • 공제 금액: 1인당 300원 → 500원으로 확대 • 제출 기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② <p>▶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는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p>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사항은 없어요?</p> <p>2026년 현재 기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최근 적용되고 있는 주요 변경 사항과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p> <p>정부는 소득 파악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대상 확대와 제도 안정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p> <p>1. 주요 변경 및 유의 사항</p> <p>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출 주기의 단축과 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의 상시화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금액: 제출한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제출 주기: 기존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매월 성실히 제출할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간병, 가사, 골프장 캐디, 대리구인, 수하물 운반, 중고차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등 10개 업종의 용역을 앞선-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p>2.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p> <p>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사후 관리나 배제 조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p>

[사례 3] 개정세법 등 신속정확 반영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 (26.1.1.부터) 1억400만원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오류 04/2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안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감면 내용

-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감면 비율:
 -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50% 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100% 감면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50%)
-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인 경우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예정)**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적용
- 업종 및 규모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감면 한도: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

② 범용 AI (관련제도 미인지) (4.17. 현재)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추가 세액감면이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생계형'이라는 개념을 감면 요건으로 직접 쓰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감면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따릅니다.

✔ 핵심 정리

- 👉 생계형 창업 → 별도 감면 없음
- 👉 창업중소기업 요건 충족 → 세액감면 적용

즉,

생계형이든 아니든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감면입니다.

[사례 4] 개정세법 등 신속정확 반영

* 25년부터 장애인공제 인정 서류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추가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오류 10/31

🌟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안내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향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참고사항

-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원할장서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2025년 귀속 기준)

② 범용 AI (개정사항 미반영) (4.17. 현재)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1. 장애 유형별 필수 서류

구분	준비 서류	발급처
일반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정부24, 주민센터, 복지포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정부24
향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세법상 장애인용)	치료받는 의료기관(병원) 등

- 국세청 AI 챗봇은 재정경제부 예규 등 해석례의 변동사항도 충실히 학습하여 안내하며, 예규번호 등 근거를 기재하고 이를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납세자가 필요 시 예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례 5] 예규 등 변동사항 상세히 안내	
* (기존 예규) 보험모집수당 반환 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 → (변경) 필요경비 불가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② 범용 AI (개정사항 미반영) (4.18. 현재)
<p>오후 12:08</p> <p>보험모집수당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p> <p>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반환한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약 반환액이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음수가 될 경우, 총수입금액은 0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의4호, 사전-2025-법규소독-1036(2025.7.14), 기획재정부 소득세과-384(2025.04.18).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는 반환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예규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으로 총수입금액 차감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보험모집수당 반환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조정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비용 처리(필요경비 산입)는 불가합니다. <p>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p>	<p>보험모집수당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p> <p>보험설계사가 이전에 지급받은 모집수당을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에 다시 반환(환수)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경비 산입의 근거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효력 상실이나 해약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약정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반환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속 시기 (연체 처리하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연체의 경비를 보느냐"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수당을 반환한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예시: 2024년에 받은 수당을 2025년에 반환했다면, 2024년 소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의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증빙 서류 총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수당 환수 내역서: 환수된 금액과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연도의 전체 수입금액과 환수액이 반영된 내역 주의사항 (총수입금액 제외와의 차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넣는 대신, 당해 연도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신고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같으나, 장부 작성 방식(간편장부 vs 복식부기)에 따라 기재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발행한 '**연도 소득 내역**'에 환수액이 이미 차감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참고] 만약 환수 금액이 너무 커서 해당 연도 소득보다 많아질 경우(과소 발생), 다른 소득과 동산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p>

[사례 6] 답변 시 관련 예규번호 등도 함께 기재(근거기반 답변)	
① 국세청 AI 챗봇 (예규번호 제공)	② 범용 AI (예규번호 미제공) (4.18. 현재)
<p>오후 09:16</p> <p>작가로 활동중인데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려고 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해?</p> <p>작가로 활동하며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 인적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작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관련 예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2025-소득-4174(2025.11.28.)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 분류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p>작가로 활동중인데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려고 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해?</p> <p>작가로서 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인적용역사업자(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100 등)로 등록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후회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왜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이 안 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체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의 판단: 국세청과 법원은 별도의 물적 시설(사무실, 비품 등) 없이 물만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 형태)**'는 통상적으로 세법상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업종 코드의 한계: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코드 940100 (작가)이나 940909 (기타 자영업)는 창업 감면 대상 업종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업종 선택이 핵심) 작가 활동을 하시더라도, 단순히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나 '출판'의 형태를 띠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디자인업/광고업 등: 전문 작가나 삽화 작가의 경우 '자유예술가'가 아닌 '**전문 디자인업**'으로 등록하면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여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판업: 본인이 직접 출판을 겸하는 형태라면 '**출판업**'으로 등록 시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업종코드 900103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사용하면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또한, ARS, 홈택스 등 신고 절차에 대한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화면경로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례 7] ARS 신고절차 등 개정사항 상세히 안내	
* [기존] 연락처, 환급계좌 등 입력 필요 → [개정] 연락처 등 입력 불필요(간소화)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② 범용 시 (개정사항 미반영) (4.17. 현재)
<p style="text-align: right;">소독세 환급신고를 전화로도 할 수 있다는데 절차 알려줘</p> <p style="text-align: right;">오후 01:23</p> <p>종합소득세 환급신고는 전화(ARS)로도 가능합니다. ARS 신고 절차는 전년도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환급계좌, 연락처, 환급세액 등을 안내받고, 안내된 내용만 확인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p>ARS 전화 환급신고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S 전화 연결 환급금액, 환급계좌, 연락처 안내 및 확인 안내된 내용이 맞으면 바로 신고서 제출 <p>기존에는 연락처 입력, 환급계좌 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쳤으나, 현재는 안내된 정보만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어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급신고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세관 사무서에 하거나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ARS 신고는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더 자세한 신고 방법이나 환급 대상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p> </div>	<p style="text-align: right;">종합소득세 ARS로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줘</p> <p>종합소득세 ARS 신고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약 2-3분이면 완료되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p> <p>1단계: 신고 전 준비물</p> <p>ARS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인증번호 (8자리):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안내문(카톡/문자)이나 우편 안내문 우측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p>[중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이나 소득 내역에 수정 사항이 없을 때만 ARS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하거나 금액을 바꿔야 한다면 홈택스(PC)나 손택스(앱)를 이용해야 합니다.</p> <p>2단계: ARS 신고 절차 (1544-9944)</p> <p>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06:00 - 24: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544-9944로 전화 연결 2. 종합소득세 신고: 2번 선택 3. ARS 신고: 1번 선택 4. 인증 정보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5. 신고 내용 확인: 안내되는 수입 금액과 납부(또는 환급) 세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 신고 완료: 1번 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7. 추가 정보 입력 (해당 시):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받을 경우: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납부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를 문자로 발송지 선택합니다. </div>

[사례 8] 홈택스 신고 시 상세·정확한 화면경로 등 제공	
① 국세청 AI 챗봇 (상세한 경로 제공)	② 범용 시 (대략적 경로 제공) (4.18. 현재)
<p style="text-align: right;">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알려줘</p> <p style="text-align: right;">오전 10:17</p> <p>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p>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종교예납-모지등예매자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p> </div> <p>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각 화면에 [등록하기] 버튼이 있으면 반드시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고서가 완성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버튼을 통해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최종 제출된 자료가 인정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p>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제출은 홈택스 외에도 우편, 세무서 방문, ARS(개별인증번호 보유 시)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은행, 우체국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p>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알려줘</p> <p>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온라인)로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합니다.</p> <p>1 PC로 전자신고 (홈택스)</p> <p>준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소득 관련 자료 (매출, 비용, 영수증 등) <p>신고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홈택스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div> 3. 신고 유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선택 4. 자료 불러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자동 조회 가능 (간편 신고 가능) 5. 내용 입력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락된 소득이나 비용 직접 입력 공제 항목(인적공제, 의료비 등) 확인 6.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향후 납세자 맞춤형 AI 상담서비스 추진방향

- 국세청은 금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AI 상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AI 챗봇을 통해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납세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27년에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 * (예)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모두 있을 때, AI가 납세자의 신고내역 등을 검토하여 금융소득 합산 여부, 기타 절세혜택 등 **세무 컨설팅 제공 및 신고 안내**
- AI 챗봇은 아직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예산확보, 과제개발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신고, 탈세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

담당 부서 <총괄>	정보화관리관실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전승한 (044-204-4401)
		담당자	사무관	심은진 (044-204-4402)
		담당자	사무관	염준호 (044-204-4452)
		담당자	사무관	김태형 (044-204-4462)



□ 국세청 AI 챗봇 주요 특징 및 서비스

① 실무 경험을 학습한 지능형 AI 상담

- 신고 매뉴얼 등 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그간 축적된 상담 실무와 Q&A 등을 폭넓게 수집·활용하여 최신 세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함

② 세무서 직원 통합테스트를 통한 답변 정확도 확보

- 서비스 개시 전 세무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통합테스트를 실시하여 내부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답변 시 관련 법령 등 근거 자료의 출처와 유의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 답변의 신뢰도를 대폭 높임

③ 직관적인 도움 서비스 제공

-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등 총 23종의 전자신고 영상(숏폼 포함)을 챗봇 내에서 바로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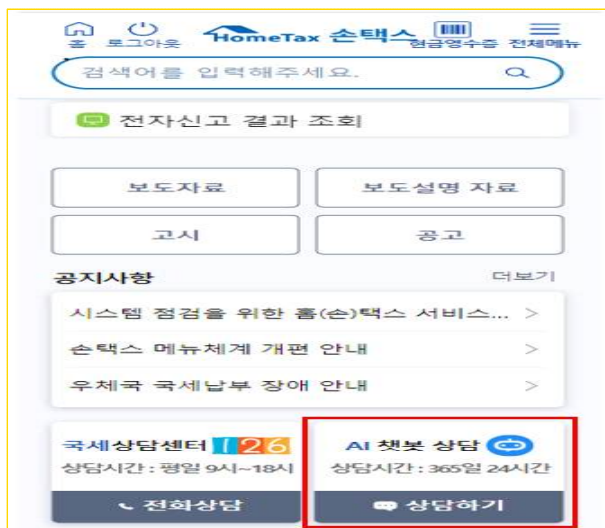
④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개시('26.5월)

- 기존 PC 환경에서만 제공되던 AI 챗봇 서비스를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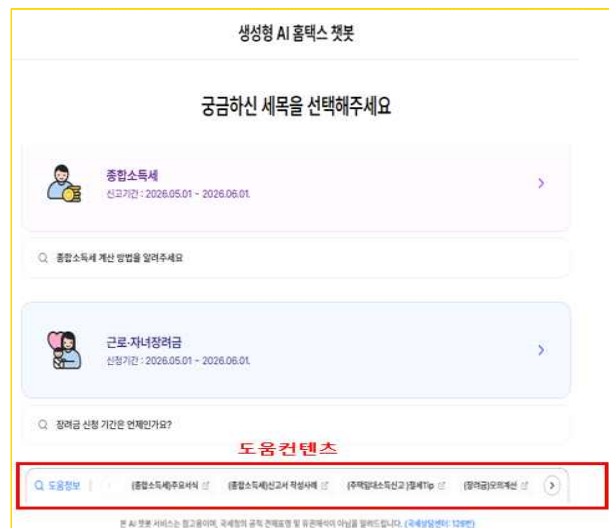
⑤ 유용한 도움 콘텐츠 전면 배치('26.5월)

-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모의계산'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도움 콘텐츠를 신규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임

① 모바일 서비스(접속방법)



② 도움 콘텐츠(책자,모의계산)



□ AI 챗봇 접속방법(PC)

☞ 홈택스(hometax.go.kr)접속 → 우측 킷메뉴 → 챗봇(🗣️) 클릭

<p style="text-align: center;">① 홈택스(PC) 접속</p>	<p style="text-align: center;">② 첫 화면</p>
<p style="text-align: center;">③ 질문 입력</p>	<p style="text-align: center;">④ 답변 제공</p>